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셀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다음장으로 이어집니다 ▶

- 보 오스탈트의 경우 장영 차이나이* 오간 지점일은 최초 보공양고일(2025.09.19)로 잡힙니다.
- 보 입구식별(보 입구)에는 300식 미만이로 *건축물의 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에 의거한타라 장영의 의무가 없으며, 올은터 풀시야이 안슈탈 견본제(올산광역시 울주군 삼읍읍 신하리 1604-5)에서 받은 장영이 원하지며 인터넷을 활용한 장영 작성는 불가능합니다.
- 보 입구식별(보스탈) 오스탈 장영신청은 없습니다.
- 장영작각: 보 오스탈트의 거주지역 및 장영활동 기인 여부와 무관하게 장영 신청 가능합니다.
- 종목별 장영의 사항: 1년당 1식(건) 장영가능하며, 동일인이 2식(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장영 신청 거부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신청과 관련된 신청정보는 사정 담당 장영접수팀이 인터넷까지 가능하며, 장영 신청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정보 및 장영기록 불가능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명: *건축물의 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행 제2항 이상에 기재된 건축물 1개(이하 계약이 취소됨)를 소유하며, 동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관련 계약사항 및 발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진재명 다른 사람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제결 이유라도 관계 변경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며, 특히 진재명 다른 사람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진조오기 사항: 장영작각 이후 미제결 진조오기일은 *건축물의 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사유제대로 분열된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제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신청 및 작성

분	청약접수	추첨일시	당첨자발표	계약여결	당첨자 동호회 배정방법
일시	2025.09.23.(화) 10:00~18:00	2025.09.26.(금) 17:00	2025.09.26.(금) 18:00	2025.09.27.(토) 10:00~16:00	
방법	견본주책 방문 청약	공개 추첨	울산의 폴리스미아 아이유셀 홈페이지 개발 조회	견본주책방문 계약	※ 공개 추첨에 의거 당첨자의 동호회를 유니피커 프로그램 (http://unipicker.com) 으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막리 160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막리 1604-5)		www.polysia-iussell.co.kr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막리 160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막리 1604-5	※ 별도의 예비 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illegible]

지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		내진설계 계수		건물중요도
	S2		1.2		C		1.2
임시 예정일 : 2029년 1월 예정(임시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임시 일정은 추후 통보) - 준공 및 임시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연장)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재자연해, 안반, 문화재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영 공사일정 및 입설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설 지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입	공급호설(수)	공급면적(㎡)			기타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자본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840	166	84,9665	33,8560	118,8225	63,3994	182,2219	17,0616

[단위: ㎡, 설.]

- ※ 표지: 평면도를 통한 사정
 - 면적 표시 방법을 통한 평면 대신 높이 표시 방법(단위: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장에 적용 없음
 - 도시계획 구역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사지분할은 용도별, 실행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분 배분하며, 추가 공용 면적과 지지분할에 따른 공용부라 표시, 실측량과 토지 소유자 미합치한 구역에 따라 계면적과 등기 면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오폭수율은 건축주별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주별 발코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만족수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됨.
 - 본 건축물의 대지 면적, 오폭수율, 그린율(생지식)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폭수율 등 그린율(생지식)의 대지분할에 대해 대지분할 및 대지분할 변동을 요구할 수 없음.
 - 대지분할은 전체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및 일부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행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음.
 - 전유면적 및 건물 부속물과 그 적용 대상은 정경지치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업 내용에 대한 광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정경지치 분야에 직접 적용하지 가하며, 오폭수율에 의한 대지의 비율에 대한 적용을 제외함.
 - 건축, 전매, 대지분할에 관한 사항은 양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실]

[illegible]

- ※ 시사
- 총량 부담금은 총 양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기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량정액 기준 건축물의 건물 부속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배부인 건축물(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서 전량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 면적에 공용면적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상기 산별 적용대상은 도시계획지구 건축배치규칙(제12조, 제13조,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제86호, 제87호, 제88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7호, 제98호, 제99호, 제100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17호, 제118호,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 제123호, 제124호, 제125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 제135호,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제158호, 제159호, 제160호, 제161호, 제162호, 제163호, 제164호, 제165호, 제166호, 제167호, 제168호, 제169호, 제170호, 제171호, 제172호, 제173호,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제177호, 제178호, 제179호, 제180호, 제181호, 제182호, 제183호, 제184호, 제185호, 제186호, 제187호, 제188호, 제189호, 제190호,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 제195호, 제196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제206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 제210호, 제211호, 제212호,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제216호, 제217호, 제218호, 제219호, 제220호,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제227호, 제228호, 제229호, 제230호, 제231호,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5호,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제250호, 제251호, 제252호, 제253호, 제254호, 제255호, 제256호, 제257호, 제258호, 제259호,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6호, 제267호, 제268호, 제269호, 제270호, 제271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제275호, 제276호,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83호,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제291호, 제292호, 제293호, 제294호,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제312호, 제313호, 제314호, 제315호, 제316호, 제317호, 제318호, 제319호,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제324호, 제325호, 제326호, 제327호,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2호,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제346호, 제347호, 제348호, 제349호,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제353호, 제354호, 제355호, 제356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제360호, 제361호, 제362호, 제363호, 제364호, 제365호, 제366호, 제367호, 제368호, 제369호, 제370호, 제371호, 제372호, 제373호, 제374호, 제375호, 제376호, 제377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제381호, 제382호, 제383호, 제384호, 제385호, 제386호, 제387호, 제388호, 제389호, 제390호, 제391호, 제392호, 제393호, 제394호,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제399호, 제400호,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제407호,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제413호,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제420호, 제421호, 제422호, 제423호, 제424호, 제425호, 제426호, 제427호, 제428호, 제429호, 제430호, 제431호, 제432호, 제433호, 제434호, 제435호, 제436호, 제437호, 제438호, 제439호, 제440호, 제441호, 제442호, 제443호, 제444호, 제445호, 제446호, 제447호, 제448호, 제449호, 제450호, 제451호, 제452호, 제453호, 제454호, 제455호, 제456호, 제457호, 제458호, 제459호, 제460호, 제461호, 제462호, 제463호, 제464호, 제465호, 제466호, 제467호, 제468호, 제469호, 제470호, 제471호, 제472호, 제473호, 제474호, 제475호, 제476호, 제477호, 제478호, 제479호, 제480호, 제481호, 제482호, 제483호, 제484호, 제485호, 제486호, 제487호, 제488호, 제489호, 제490호, 제491호, 제492호, 제493호, 제494호, 제495호, 제496호, 제497호, 제498호, 제499호, 제500호, 제501호, 제502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506호, 제507호, 제508호, 제509호, 제510호, 제511호, 제512호, 제513호,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제517호, 제518호, 제519호, 제520호, 제521호, 제522호, 제523호, 제524호, 제525호, 제526호, 제527호, 제528호, 제529호, 제530호, 제531호, 제532호, 제533호, 제534호, 제535호, 제536호, 제537호, 제538호, 제539호, 제540호, 제541호, 제542호, 제543호, 제544호, 제545호, 제546호, 제547호, 제548호, 제549호, 제550호, 제551호, 제552호, 제553호, 제554호, 제555호, 제556호, 제557호, 제558호, 제559호, 제560호, 제561호, 제562호, 제563호, 제564호, 제565호, 제566호, 제567호, 제568호, 제569호, 제570호, 제571호, 제572호, 제573호, 제574호, 제575호, 제576호, 제577호, 제578호, 제579호, 제580호, 제581호, 제582호, 제583호, 제584호, 제585호, 제586호, 제587호, 제588호, 제589호, 제590호, 제591호, 제592호, 제593호, 제594호, 제595호, 제596호, 제597호, 제598호, 제599호, 제600호,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 제604호, 제605호, 제606호, 제607호, 제608호, 제609호, 제610호, 제611호, 제612호, 제613호, 제614호, 제615호, 제616호, 제617호, 제618호, 제619호, 제620호, 제621호, 제622호, 제623호, 제624호, 제625호, 제626호, 제627호, 제628호, 제629호, 제630호, 제631호, 제632호, 제633호, 제634호, 제635호, 제636호, 제637호, 제638호, 제639호, 제640호, 제641호, 제642호, 제643호, 제644호, 제645호, 제646호, 제647호, 제648호, 제649호, 제650호, 제651호, 제652호, 제653호, 제654호, 제655호, 제656호, 제657호, 제658호, 제659호, 제660호, 제661호, 제662호, 제663호, 제664호, 제665호, 제666호, 제667호, 제668호, 제669호, 제670호, 제671호, 제672호, 제673호, 제674호, 제675호, 제676호, 제677호, 제678호, 제679호, 제680호

2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신정각 및 유의사항
- 신정각의 작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공고일(2025.09.1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약신청은 1인당 1월(1)건 청약가능하며, 동일인(2)월(1)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미모집)로 유의사항이 바랍니다.
- 미계약 불량 발생 시에는 1건출발 분량에 관한 벌칙을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계약으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 | 구분 | 청양접수 | 추첨일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당첨자 동·호수 배정 방법 |
|----|----------------------------|----------------------|----------------------|----------------------------|----------------|
| 일시 | 2025.09.23.(화) 10:00~18:00 | 2025.09.26.(금) 17:00 | 2025.09.26.(금) 18:00 | 2025.09.27.(토) 10:00~16:00 | |

방법	견본주액 방문 신청 공개 추정	울산역 폴리시아이유셀 홈페이지 개발 조치	견본주액 방문 계약	※ 공개 추정에 의거당점자의 동종자료를 유니파커 프로자(www.uniparker.com)으로 무작위 배정합니다.
장소	울산역 폴리시아이유셀 견본주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4-5)	www.polysia-iuseell.co.kr	울산역 폴리시아이유셀 견본주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4-5)	※ 별도의 예비 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안내 | |
|----------|---|
| 구분 | 청약 신청 방법 |
| 청약신청금 | · 청약신청금 없음 |
| 청약 시정 방법 | · 2025.09.23 (화) 울산역 폴리스미아 아이유세 경보주택 방문 청약(10:00~18:00) |

- | | | |
|-----------------|---------------------|---|
|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 · 신분증
· 위임인 · 위임장(견본주제 바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인감도장, 신분증
· 수임인 : 신분증, 인장(을 서명용으로 대체) |
|-----------------|---------------------|---|
- ※ 청약 접수 완료 기준은 18:00까지 견본주제백형 접수한 청약지 대상으로 마감됩니다.
- ※ 인기 제출서류는 도청 부양방과일(2025. 9. 19)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기주제백형의 용도란은 공문으로 발급분으로 용도를 본인인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약 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접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23.(화), 10:00~18:00)

- ※참조 및 당첨자 발표
- 주최 : 2025.09.26(금) 17:00 당시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거 유ниц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www.dojisa-iussel.co.kr)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야하며 해당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연도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09.26.(금) 18:00 이후	- 당사 홈페이지(www.polysia-iusell.co.kr)

- | | |
|-----------|--|
| 당첨자 선정 방법 | -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예정임다. (유니피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첨) |
| 기타 사항 |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현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 당첨자에 대한 안내 사항

-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자격 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상조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좌제결기(간)	계좌발결지(간)	장소	계좌금납부
2025.09.27(토)	10:00 ~ 16:00	울산역 플라자1 아이유빌 건물5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와리 1604-5)	분양대금 납부 계좌에 무통장 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아래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계좌 입금 또는 현상에서 직권 동기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의하시어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좌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금납부 계좌 ※ 분양지분거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 관리자인 납부 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 관리자에게 납부하시어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 경남은행	201-0146-5604-00	(주)쌍원	입금 시 오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4동 121호에 당첨자 홍길동" → 10412101홍길동)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별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건물주에게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4동 121호 계약자 → 10412101홍길동) · 분양대금, 주가 선택목표(우선유선) 납부 계좌는 서로 상이하여 이점 유의하시어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공급권 계약조 인금입하시기 바라며, 사업 자체 및 실태는 납부기간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공급권 계약의 분양(공급)금 납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어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외/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일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어 바랍니다. · 착오 및 다른 문제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사업 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계약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현상 수납이 불가하니 분양금액 납부 계좌로 입금하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증도: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증도: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표본지 1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사신고증(재외포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외국인) |

법인 계약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여도 반영공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청약접수(응수)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프스탈 계약용)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증)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증(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인 계약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간부추천 배지)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프스탈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공통	· 인지지 전자수입인자 : 1천원 이하(1천원) / 1천원 월 초과 ~ 3천원 이하(2만 원) / 3천원 월 초과 ~ 5천원 이하(4만 원) / 5천원 월 초과~1억 원 이하(7만 원) / 1억 월 초과~10억 원 이하(15만 원) / 10억 월 초과(35만 원) / 1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15만 원) ※ 전자수입인자 (종이 부사용) 구매하여 전자수입인자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 후 구매 및 출력 · 오프스탈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에 1/2씩 공동 부담

- 상기 제증명서 제출은 2025. 09. 10. 이후 무기한 유효하며,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음란으로 발표되므로 본인(인)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단, 본인 및/또는 경우 변경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외의금·인출증·건강증명서·건강진단서·정신진단서 등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으로 하여야 함으로 주소·성명·신분·전화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부속적 결함에 대해서는 사실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인)의 주소·연락처는 변경되는 경우 주소·연락처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역관련(인)의 계약기간 고지 사항과 경우 상·하 징병률의 변동 사항을 주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llegible]

- **중도대출 안내**
 - 본 포스트텔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일선)을 시현할 예정입니다. · 대출기간: 주휴 별도 금리 적용입니다.
 - 대출 관련 사항은 분양보증리퍼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사전 계약이 완료된 중도금 리퍼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에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계약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알선·승인·대금 지불 등 다양한 사정변인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금보증 및 위약금 등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시 계약자)처방.
 - 계약자는 본포스트텔 중도금 정정보정 부동산사채(채권 제당)변경, 국세공금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전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정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정정하여 지급 내세내야 합니다.
 - 분양사채는 대출금리와 연이율, 본포스트텔의 분양금 시 대출예매금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추후 금공과)를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 포함) 내용을 근거로 한 사유에 대출예매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이자)가 됩니다.
 - 금융권과 계약 체결, 대출기간의 연이율규정, 집전대출 보증기간의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극대출")시 금공과)를, 집전대출 보증기간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위기여가 경우 이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로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 하지는 경우 본인 계약자(본인)와 제3자 사정 조정이 앞선 중도금 대출을 승인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상환자의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승인받은 이후의 부속사채가 발행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사정에 의하여 조항하여 해당 분양금 납입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공과)를 사전에 체결 및 (공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조건 변경 사채를 취급하고,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채에 체결 및 (공인)에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있는 중도금 대출이 발생 시 사정 조정이 정지하는 최초 일일(사채)일 전일까지는 사채 주체가 부당하고, 입점 지정(가)사채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 일일(사채)과 관계없이 계약자(사채)이 중도금 대출을 부당하고

- [illegible]

4 추가 선택품목 안내

- 추가 선택품목(음상오셰) 유

구분			세부 품목	선택	공급가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비고	
시스템 에어컨	보급형	상성	2대: 실1(가실)+실2	-	0	0	0	기본제공	
			3대: 실3 또는 실4	택1	1,500,000	150,000	1,350,000		
			4대: 실3+실4		2,400,000	240,000	2,160,000		
	고급형 (공기정장)	상성	2대: 실1(가실) + 실2 (기본제공 품목 상용 시공 시)		500,000	50,000	450,000		
			3대: 실1(가실) + 실2 + 실3 또는 실4	택1	2,100,000	210,000	1,890,000		
			4대: 실1(가실) + 실2 + 실3 + 실4		3,100,000	310,000	2,790,000		
가전 및 선풍기	냉장고 SET	상성	인피니티 패키지(냉동고+와인냉장고+생장고+김치냉장고)	택1	19,150,000	1,915,000	17,235,000		
			상성		비스포크 패키지(냉장고+김치냉장고+주방가구)	4,700,000	470,000	4,230,000	
			LG		오브제 패키지(냉장고+김치냉장고+주방가구)	6,600,000	660,000	5,940,000	
	전기쿠팡	상성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택1	600,000	60,000	540,000		
			LG		프리미엄형 3구 인덕션	1,100,000	110,000	990,000	
	전기오븐	상성	LG	일반형 오븐 38L	택1	540,000	54,000	486,000	
			상성	프리미엄형 오븐 50L		890,000	89,000	801,000	
	식기세척기	LG	프리미엄 식기세척기	-	1,200,000	120,000	1,080,000		
			주방TV	-	350,000	35,000	315,000		
	비데	욕실1, 2 도기일체형비데	-	1,800,000	180,000	1,620,000			
	환풍기	욕실1, 2 스마트 복합환풍기	-	1,050,000	105,000	945,000			
	제습기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790,000	79,000	711,000			
연관	프리미엄 신발장(브라운즈계 도어 + 풀도련도어 + 창고 시스템가구 + 신발 살균기 + 워킹케어 선반)	-	950,000	95,000	855,000				
마감재 및 가구	복도/실1(가실)	상성	3연동 중문(수동)	택1	1,500,000	150,000	1,350,000		
			3연동 중문(자동)		2,500,000	250,000	2,250,000		
			벽체 마감특화(포베린타일+벽체시트판넬)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상성	비데가방 특화(아테리산 포베린타일)	택1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마감특화(세라믹타일+수전+싱크볼)		3,500,000	350,000	3,150,000		
			주방 마감특화(엔지니어스톤+수전+싱크볼)		1,500,000	150,000	1,350,000		
	실2, 3, 4	상성	주방 가구특화(아일랜드 하부장+아일랜드 하부장 빌트인콘센트 + 냉장고장+복도펜트더 폴딩도어)	-	3,800,000	380,000	3,420,000		
			프리미엄 드레스룸(실2) 조명형화장대 + 벽면형싱싱 시스템 가구	-	1,800,000	180,000	1,620,000		
			수납장외(실3 붙박이장)	-	1,300,000	130,000	1,170,000		
	욕실1, 2	상성	프리미엄 욕실(포베린 벽면+벽+백+매니+수전+샤워부스+욕조+악세서리+프리미엄 욕조(욕실2))	-	3,300,000	330,000	2,970,000		
			거실(실1) 조명특화(거실 우물장정 감성조명 + 거실/복도/아일랜드 등식+벽 락트레일등)	-	4,300,000	430,000	3,870,000		
			주방 조명특화 (주방 우물장정 + 주방우물장정 간접등)	-	500,000	50,000	450,000		
조명	실2, 3, 4 조명특화(실 직부등 감성조명)	-	400,000	40,000	360,000				

- 가. 시제품이란 (가설)설계 및 실험의 모형을 의미하며 제품이다.
- 나. 시제품 종류 (유형상)는 판매가 0인 미시제품, 공급금액에 따라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시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계에 따른 기존 설계 품목의 미설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계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다.
- 다. 상기 유상형은 계약기간 내내 생산에 참여 가능하다. (후자 별도 안내 예정)
- 라.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추가 선택품목 (유상형)선 중도금 납부일 이후)에 추가 선택품목 (유상형)설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하다.
- 마. 상기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제품 출시, 성능 개성 등 의사유로 동공의 제품으로부터서 포함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성형 불발 사유 등 제4 사항에서는 윤상식 플라스미아에 이월된 견주변에서 확인하지가 바랍니다.
- 바. (가) 추가 선택품목 (유상형)설에는 취득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유상금 지급으로부터 취득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밤. (가) 추가 선택품목 (유상형)설 사유는 계약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유상금 지급으로부터 취득금에 포함되며, 계약가 및 유상금 지급이 불가하며, 추가 선택품목 (유상형)선 선택에 따라 일일 배산기 구 및 조영기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 추가/삭제 항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 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배합표에 준합니다.
- 지점별 실적은 납부하지 아니하 추가선택목에 비준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기비율 분담금, 기금 제과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된 분임대금(승급금, 잔금) 일부만이 오해나 불확실한 계정으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통보사항이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총액 및 계좌자 성명등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계각금 납부 : 계각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은 분양증보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증보관에서 계각금(연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청과도 결제 불가]

